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민간위탁사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공정성,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선정기준 구체화 및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추가

마.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5조)

사.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자. 수탁기관의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차.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제19조)

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타. 위탁사무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동의를 받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자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위탁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위탁사무의 성과보고서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국·소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또는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

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위탁계약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4. 민간위탁사무와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

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 운영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거나 감면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거나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

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로 정산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제17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2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2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체결”로 한다.

⑦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25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체결”로 한다.

<3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협약서는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2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구미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43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5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강 유 현
	담 당 자	박 민 주 (480-6773)